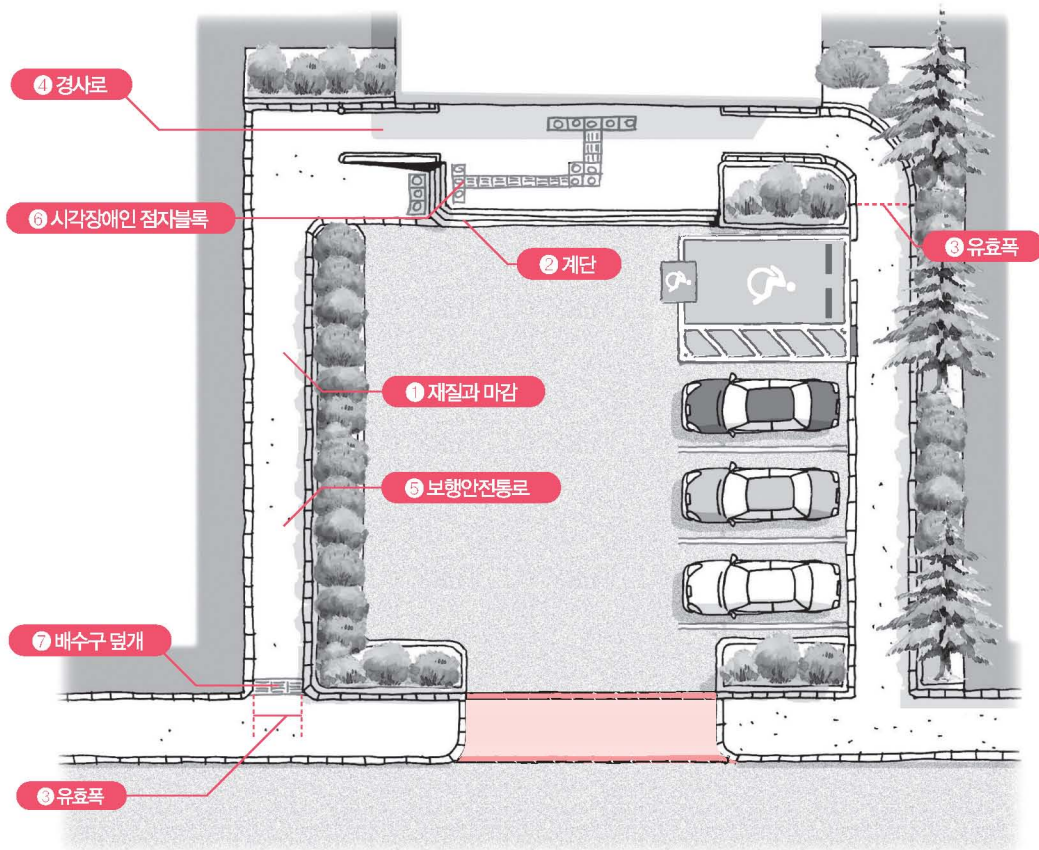


1. 대지 내 보도 및 접근로



■ 설치원칙

건물의 주출입구로 이어져 있는 대지 내 보도와 주차장과 연결되어 있는 접근로는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른 이의 도움 없이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.

■ 설치요점

- 대지 내 보행자 통행로는 자동차 도로와는 반드시 분리되어야 하고, 교차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보행자 우선이 보장되는 구조로 만들어져야 한다.
- 보행로는 휠체어, 유모차 등의 통행에 장애가 되는 단차, 유효폭, 기울기, 마감재의 재질, 구조 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.
- 시·청각 또는 지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각, 음성(또는 음향) 유도장치 등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.
- 모두가 이용하는데 편리하고 안전한 보행로가 되도록 하고 장애물이 될 수 있는 편의시설은 설치하지 않는다.

1) 재질과 마감

- 보행자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.
- 불규칙하거나 면이 거칠어 돌출되는 것을 피하고 표면이 평탄하고 규칙적으로 고정되도록 한다.
- 보도블록 등으로 보도를 포장하는 경우에는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면을 평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.
- 광장 등 넓은 공간의 바닥마감 및 재질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 및 경고의 기능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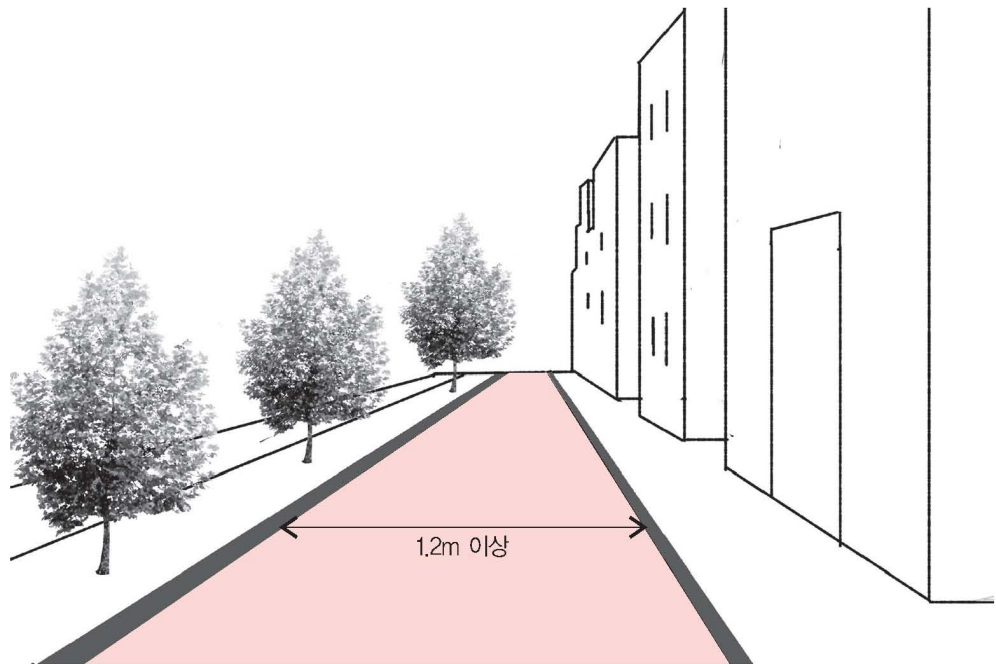
〈접근로의 바닥 마감 및 재질〉

2) 계단

- 덮개가 있는 배수로를 최대한 활용하여 설치하되, 계단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.
- 계단 디딤판의 너비와 철평의 높이가 일정하여야 한다.
- 디딤판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조명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, 계단코는 디딤판과 구별이 용이한 색상의 논슬립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
3) 유효폭

- 보도의 유효폭은 최소한 1.2m 이상이 되어야 하고 2개 이상의 보도가 만나는 지점에는 1.5m×1.5m 이상의 교행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통과 유효폭은 교통표지판, 기둥, 나무, 기타 장애물 등으로 축소되지 않아야 한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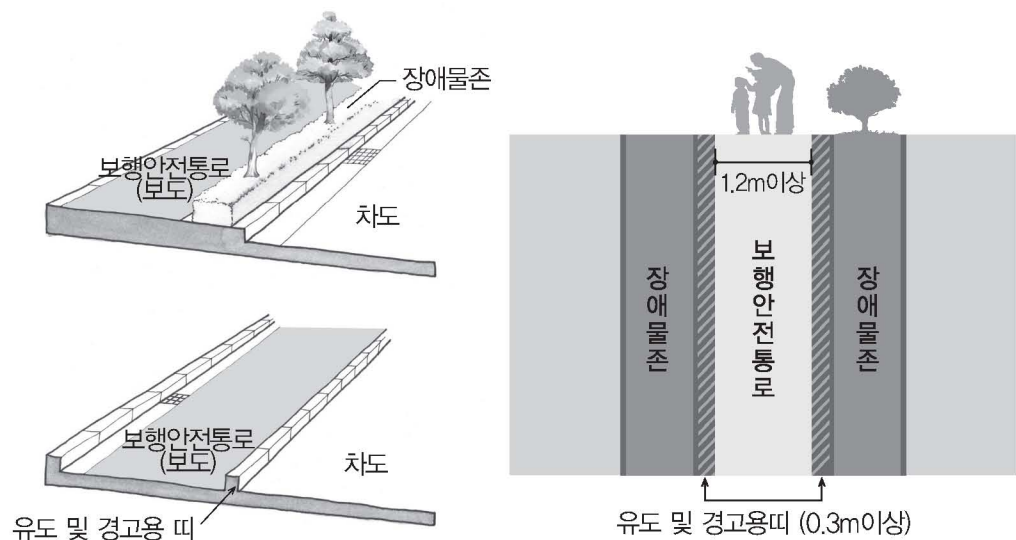
〈보도의 유효폭〉

4) 기울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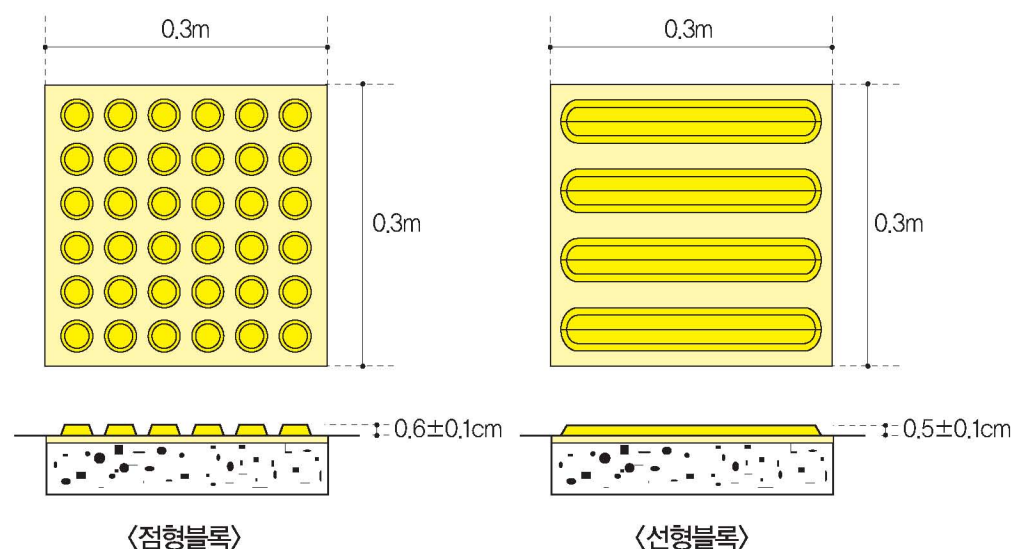
- 보도 및 접근로의 상하 기울기는 1/18 이하로 하여야 한다.
- 보도 및 접근로의 좌우 기울기는 1/24 이하로 하여야 한다.
- 경사진 접근로가 연속될 경우에는 휠체어 사용자가 휴식할 수 있도록 30m마다 1.5m×1.5m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- 주 접근로에 단차가 있을 경우, 그 높이 차이는 2cm 이하로 하여야 한다.

5) 보행안전통로

- 장애물의 간섭 없이 통행할 수 있는 보행안전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보행안전통로의 좌우에는 시각장애인의 접근 및 이동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폭 0.3m 이상의 유도 존을 설치한다.
- 유도 존은 보도와 차도의 경계부근에 턱을 설치하거나 바닥재의 질감 및 색상 등에 차이를 두어 표현한다.
- 보행장애물(가로등, 전주, 가로수 등)은 장애물 존에 설치하여 보행안전통로의 연속성을 확보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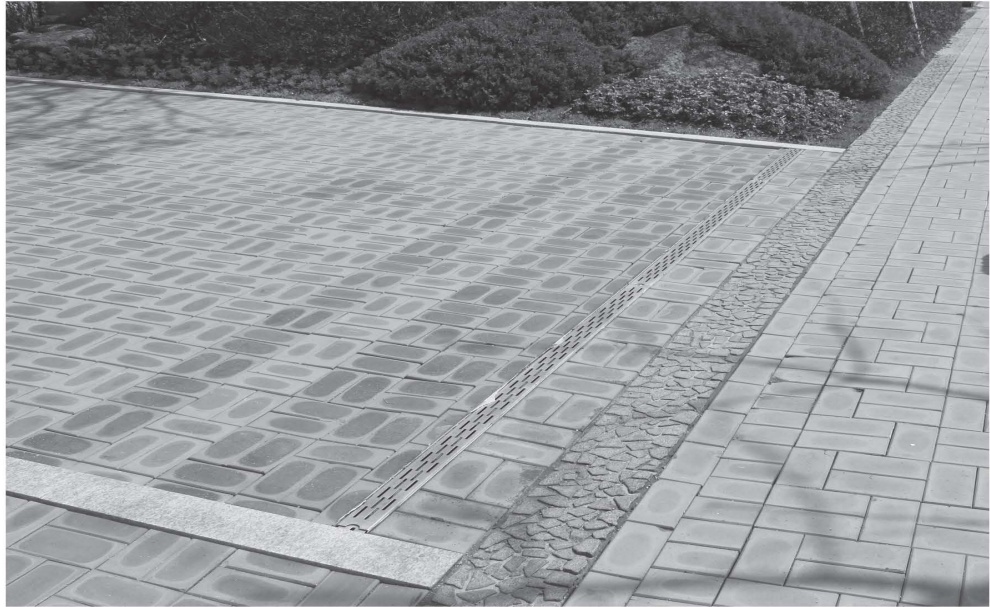
6) 시각장애인
점자블록

- 보행안전통로 설치가 어려운 유효폭 2.1m 이상의 보도에는 중앙에 시각장애인 선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보행안전통로 좌우 가장자리에는 폭 0.3m 이상의 색상, 질감 차이를 이용한 경고용 바닥재를 설치한다.
- 계단 또는 경사로 등 바닥높이의 변화가 있는 곳과 방향을 전환하는 지점에는 바닥재의 색상 또는 질감차이 등을 이용한 경고장치를 하여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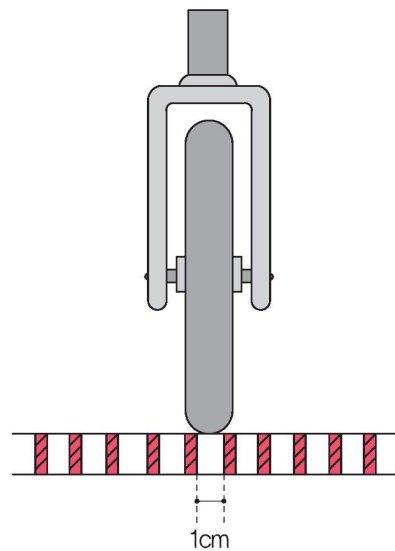


7) 배수구 덮개

- 배수구, 공동구의 덮개 등은 보도 위에 설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보도 위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덮개의 표면이 보도와 동일한 높이가 되도록 하고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간격이 1cm 이하가 되도록 한다.



〈덮개의 설치〉



〈덮개의 틈새 크기〉